

의안번호	2219238
의 퇴 인	이상희 의원
회 답 일	2026. 9. 3.
추계번호	26A289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제2항제4호 (부담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¹⁾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4. 「<u>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u>」 제2조제4호²⁾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재량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1조제2항제4호 (부담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요금 부과 시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의 경우 2조 7,646억원이 부담금 수입으로 수납되었음

[표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수입(2023~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부담금 수입 결산액	30,083	30,757	27,64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기술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5년 12월 16일 제정(2026.6.17. 시행)되었음
 - 다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저탄소철강기술에 대한 선정, 구체적 인증 기준·절차 등은 현 시점(2026.9.1.)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대상이 되는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